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출자 및 제출경과

- 의안번호 : 2825
-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 제 출 일 : 2025년 5월 26일
- 회 부 일 : 2025년 5월 29일

2. 제안이유

- 납세자보호관의 업무 범위에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 '25. 1. 1.자로 개정·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시세 기본 조례 일부 조문을 삭제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선정 대리인 업무를 현행 세무부서에서 납세자보호관으로 이관하여 조례 일부 조문 삭제(안 제8조 ~ 제10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1조의2
- 나. 예산조치 : 협의완료(예산담당관 협조)
- 다. 협의사항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규제 없음.

(2) 예산담당관(비용추계):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제출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평가제외

(4) 양성평등담당관(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5) 평가담당관(공공갈등진단): 갈등사항 없음.

(6) 조직담당관(위원회 신설): 해당 없음.

(7)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검토의견:
해당 없음.

라. 입법예고(2025. 4. 3. ~ 4. 23.) 결과: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가. 개정의 취지 및 배경

-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 개정·시행*으로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 업무가 납세보호관의 업무범위에 포함**됨에 따라, 본 조례에 규정된 선정대리인 관련 조문***을 삭제(이관)하려는 것임.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2025.1.1. 시행)

** 선정대리인 사무 이관 : 재무국(세제과) → 기획조정실(법무담당관)

*** 선정대리인 관련 본 조례 조문(안 제8조부터 제10조) 삭제

※ 본 조례개정안의 삭제 조문은 기획조정실 소관 「서울특별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조례」에 반영하여 시장이 5월 26일 제출, 6월 13일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원안 가결 되었음.

- 납세자보호관 제도는 2006년 도입되었으나 지방자치단체 관심부족, 독립성 미흡 및 저조한 운영실적 등으로, 행정안전부의 관련 법령 개정(2018.1.1.)을 통하여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납세자보호관을 전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배치하여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바 있음.
- 또한, 행정안전부는 당초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 외에 시민 권리구제를 담당하는 부서에 배치하도록 권고하면서, 시·도의 경우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행정심판담당관실에 배치를 권고하기도 하였음.

〈 본 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 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 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세기 본법」 및 ----- ----- -----.
제8조(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영 제62조의2제2항제2호 각 목의 소유 재산 평가는 「지방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다.	<삭 제>
제9조(서울특별시 선정 대리인의 위촉·해촉 등) (이하 생략)	<삭 제>
제10조(선정 대리인 신청·통지 등) (이하 생략)	<삭 제>

- 본 개정안의 개정 취지는 납세자가 과세처분 등에 불복할 경우 이를 지원
하는 ‘선정 대리인’을 징세를 목적으로 하는 세정부서(재무국 세제과)에서
위촉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이해관계의 상충으로 제도 안내·홍보 등에
소극적일 수 있는바,
- 본 개정조례안을 통해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개정 취지*에 맞게 별도의
독립된 기관인 기획조정실의 ‘납세자보호관’ 사무에 ‘선정 대리인’ 사무를
이관(2025.2.14. 완료)하고 이에 대한 본 조례 조문을 삭제하려는 것임.

〈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시행('25.1.1) 〉

(종전) 납세자보호관 업무(지방세기본법시행령§51조의2)	'25. 1. 1. 개 정
1.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등에 관한 사항	1~4. (현행과 같음)
2. 세무조사·체납처분 등 권리보호요청에 관한 사항	
3.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등에 관한 사항	5. (신설) 지방자치단체 선정
4.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	대리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납세자 권리보호와 관련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	6. (현행 제5호와 같음)

〈 선정대리인 사무 개요 〉

■ (개요) 납세자의 지방세 불복청구 시 무료로 세무대리인을 지원하는 권리구제 지원 제도(지방세기본법 제93조의2,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제9조·제10조)
■ (지원대상) 청구세액 2천만원 이하인 영세 개인 또는 법인 납세자
■ (선정대리인 현황) 총 20명 (임기 2년: 2024. 3. 2. ~ 2026. 3. 1.) 변호사 5명, 공인회계사 4명, 세무사 11명 ※ 2024.3.2.일 위촉, 시 일괄 관리
■ (선정대리인 수당) 의견서 작성 건당 15만원, 의견 진술 건당 10만원 * '25년 예산액: 1천만원 (의견서 작성 50건×150,000원, 의견 진술 25건×100,000원)

- 한편, 선정대리인 제도 시행(2020.3.2.) 이후 재무국(세제과)의 '선정 대리인' 운영 실적은 6건에 불과하여 불복청구 납세자 지원에 있어서 제도가 활성화 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재무국 선정대리인 운영 실적(2020. 3. 2. 제도 시행 이후) 〉

(단위: 원)

지원년도	과세금액	쟁송유형	신청인	대리인(자격)	주요쟁점	결과
2023	6,153,490	이의신청	개인	세무사	가산세	기각
2024	7,133,600	이의신청	개인	세무사	상속 1주택	기각
	156,320	이의신청	개인	세무사	장애인 차량	취소
	6,000	이의신청	개인	세무사	주민세	취하
	396,460	이의신청	개인	회계사	상속 취득	기각
2025	5,343,570	적부심	개인	세무사	상속 취득	불채택

※ 2023년 1건 지원, 2024년 4건 지원, 2025년 1건 지원

- 다만, ‘선정 대리인’ 사무의 경우는 줄곧 세정부세에서 운영해 오으로써 제도가 활성화 되지 못하였는바, 본 개정조례안을 통해 세정부서와 별도의 독립된 기관인 기획조정실의 ‘납세자보호관’ 사무에 ‘선정 대리인’ 직무를 이관(2025.2.14.)하여 시민의 권리 보호 기능을 확대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전 문 위 원	정 찬 일	입법조사관	최 석 훈
---------	-------	-------	-------

〈참고자료〉

【지방세기본법】

제77조(납세자 권리보호)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무를 수행할 때 납세자의 권리가 보호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6.>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하여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의 자격·권한 등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5. 1. 1.] [대통령령 제35175호, 2024. 12. 31., 일부개정]

제51조의2(납세자보호관의 업무·권한·자격 등) ① 법 제7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등에 관한 사항
2. 세무조사·체납처분 등 권리보호요청에 관한 사항
3.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등에 관한 사항
4.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
5. 법 제93조의2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납세자 권리보호와 관련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납세자보호관이 제1항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요구
2. 위법·부당한 세무조사의 일시중지 요구 및 중지 요구
- 2의2. 세무조사 과정에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세무공무원 교체 명령 요구 및 징계 요구
3. 위법·부당한 처분이 행하여 질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처분 절차의 일시중지 요구
4. 그 밖에 납세자의 권리보호와 관련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③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또는 조세·법률·회계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중에서 그 직급 또는 경력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보호관의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 추진실적을 법 제149조에 따른 통계자료의 공개시기 및 방법에 준하여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납세자보호관의 업무처리 기간 및 방법, 그 밖의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